

[별표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는 주표시면에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 상자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가.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소의 명칭("업체명" 또는 "업소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 같다)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되,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그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다른 위생용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해당 위생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제조위탁업소(위탁제조원)으로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나. 위생물수건처리업소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위생용품수입업소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수입업소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의 명칭

라. 위생용품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위생용품을 단순히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위생용품수입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위생용품의 국외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업소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수입업소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국외제조업소 : 영업소의 명칭

마.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위생용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소와 판매자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업소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판매업소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4. 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의 내용량은 제품 형태에 따라 길이 또는 수량으로 표시하되 다음에 따른다.

1) 길이를 표시할 때에는 너비와 겹수를 함께 표시한다.

길이 : 00 m (너비 : 00 mm, 0겹)

2) 수량(매수)을 표시할 때에는 가로, 세로와 겹수를 함께 표시한다.

수량 : 00 매 (00 mm(가로) x 00 mm(세로), 0겹)

3)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할 때에는 1) 또는 2)의 표시사항과 함께 포장된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부족량
중량 또는 용량	50 g(ml) 이하	9 %
	50 g(ml) 초과 100 g(ml) 이하	4.5 g(ml)
	100 g(ml) 초과 200 g(ml) 이하	4.5 %
	200 g(ml) 초과 300 g(ml) 이하	9 g(ml)
	300 g(ml) 초과 500 g(ml) 이하	3 %
	500g (ml) 초과 1 kg(ℓ) 이하	15 g(ml)
	1 kg(ℓ) 초과 10 kg(ℓ) 이하	1.5 %
	10 kg(ℓ) 초과 15 kg(ℓ) 이하	150 g(ml)
	15 kg(ℓ) 초과 50 kg(ℓ) 이하	1 %
길이	5 m 이하	허용하지 않음
	5 m 초과	표시량의 2 %
수량	50 개(매) 이하	허용하지 않음
	50 개(매) 초과	표시량의 1 %를 반올림한 정수값

* %로 표시된 허용부족량(오차)은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단,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의 경우 내용량을 길이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너비의 오차는 3 mm까지, 내용량을 수량(매수)으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가로 및 세로의 오차는 각각 5 mm 까지 허용한다.

* 두루마리(롤)의 길이 및 그 허용오차 규정은 2겹 이상 겹친 두루마리인 것에 대하여는 겹친 대로 적용함

5. 제조연월일

가. 제조연월일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연월일의 "연월일"의 표시방법이 가목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 또는 읽는 방법을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연월일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

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제조연월일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연월일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연월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해당되는 제품에 한함)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의 "연월일"의 표시방법이 가목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 또는 읽는 방법을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유통기한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유통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원료명 또는 성분명

가.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명 또는 성분명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

명을 선정한다.

- 다.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위생용품의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재질명 표시는 인체 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고, 재질명을 표시하는 경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된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바. 향료를 사용한 경우 그 향의 명칭[예시 : ○○향]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향(명칭)].

8. 위생용품의 유형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용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사용 및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재활용에 대한 표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종이제를 재생원료로 사

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